

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

※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 60일
신청인	단체명(법인명)	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	생년월일
	전화번호		팩스번호
	주소		

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제14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이
의
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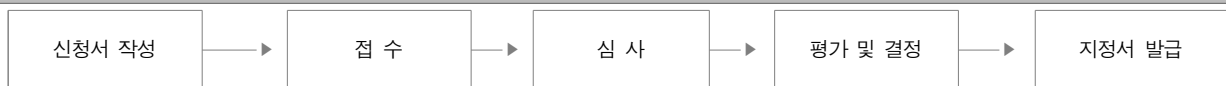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다음 사항을 적은 서류 1.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.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.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.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·설비에 관한 사항 5. 운영경비의 조달계획	수 수 료 없 음
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신청인

관계 중앙행정기관(관련 실·과)